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관계법령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

3. 주요골자

가.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

-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
- 기타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나.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

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의원
-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

다. 장애인복지위원 임기
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라. 수당 등
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출장하는 때에는 “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제정 건은

-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와 심의·복지향상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제반사항을 고려하는 사안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확보는 물론 장애인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되며
- 또한 영도구는 2006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가 기히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여타 구. 군에서도 하반기에 조례 제정할 계획으로 있음
- 따라서 관련 법령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□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나

-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
-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신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